

●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5-2호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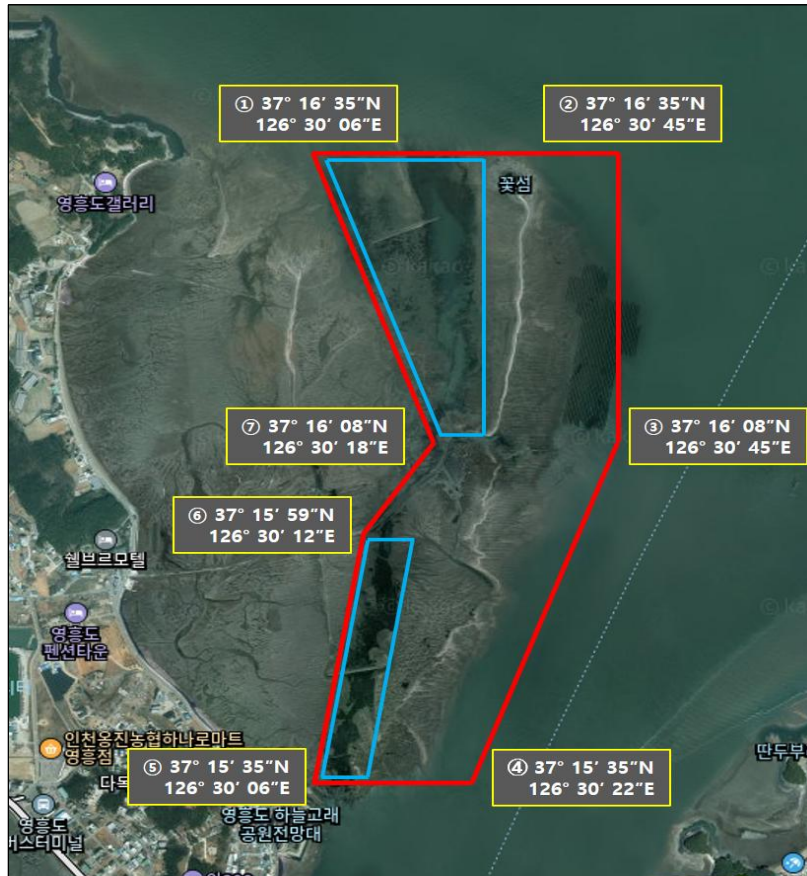
2025년 12월 12일

인천해양경찰서장

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

1. 출입통제장소 지정

- 지정사유: 갯벌(고립) 사고 예방
- 소재지: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
- 지정일: 2026. 1. 12.
- 통제시간: 야간시간(일몰 후 30분 ~ 일출 전 30분)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(기상청 기준)
- 대상: 범위 내 갯벌에서 활동하는 사람(단순 출입 포함)
- 범위



- ① (37° 16' 35"N, 126° 30' 06"E)
② (37° 16' 35"N, 126° 30' 45"E)
③ (37° 16' 08"N, 126° 30' 45"E)
④ (37° 15' 35"N, 126° 30' 22"E)
⑤ (37° 15' 35"N, 126° 30' 06"E)
⑥ (37° 15' 59"N, 126° 30' 12"E)
⑦ (37° 16' 08"N, 126° 30' 18"E)
- 위 각 지점(①~⑦)을 순차적으로
연결한 내측 해역

2. 문의처: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(032-650-2348)

3. 참고사항: 출입통제장소 내에 출입 한 자는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, 같은 법 제25조(과태료)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※과태료: 1차 위반(20만원), 2차 위반(50만원), 3차 위반(100만원)

4. 재검토 기한: 인천해양경찰서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